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6월 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5(화) 오전 11:3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6. 4(월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과
담당과장	최진혁 과장(044-203-5390)	담 당 자	김인곤 사무관(044-203-5394) 박성수 사무관(044-203-5398)

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, 첫 발을 내딛다!

- 『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』 국무회의 통과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백운규)는 **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***(이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) **시행령」**이 **오늘 국무회의에 상정·의결**되어 **6. 13.(수)부터 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*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('17.1월) → 제정·공포('17.12월) → 시행('18.6.13일)

1. 추진 배경

□ **최근 에너지산업**은 **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의 확산**과 함께 **정보통신기술(ICT) 및 신기술과의 결합**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**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**되고 있다.

* 빅데이터, AI를 통한 태양광발전 효율제고 및 예측 서비스 창출,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 결합을 통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 해소 등

□ 이에 따라,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**발전시설, 에너지 기업, 기관과 연구소** 등이 **밀집된 지역을 중심**으로 **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**을 통해 **에너지신산업을 육성**하고, **지역경제 발전을 도모**하고자,

○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**특별법이 제정**되었으며, **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**함으로써 **에너지신산업 집적지(클러스터) 조성을 본격화**할 수 있게 되었다.

2. 지정 대상 및 절차

□ **(대상 산업) 산업부**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**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*** **지정**을 위해 **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**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**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**이며,

* 물리적 경계 내 조성되는 단지가 아닌,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업, 기관, 연구소 등이 집적·협력하여 비용감소,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

○ 우선적으로, **글로벌 에너지산업 트렌드**에 부합하는 **유망 산업** 및 **에너지전환, 재생에너지 3020 이행** 등 **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**이다.

<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 (예시) >

유형	주요 내용
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	태양광, 해상풍력 등
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	태양광+ESS, 태양광+V2G, 풍력+P2G 등*
에너지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터	자율주행차+V2G+무선충전, 도로태양광 등

* Vehicle to Grid :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이동형 ESS로 활용하는 기술

* Power to Gas :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·저장하는 기술

□ **(대상 지역)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,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, 집적·융복합 효과, 일자리 창출 효과** 등을 고려하되,

○ **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**,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**주요(Anchor) 기업·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**을 **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**이다.

□ **(지정 절차) 올해 말까지 "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"을 수립**하여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,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,

○ **내년초 산업부장관**이 **직권 또는 시·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**를 통해 **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**이다.

3. 지원 내용

□ **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**되면, 해당 지역은 **정부 및 지자체**로부터 에너지 관련 ❶**기반시설 조성**, ❷**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**, ❸**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및 지원**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❶ 우선, **기반시설 조성**을 위해 **연구개발 센터**, **창업·수출지원 센터**, **시험·평가기관**, **전문기술 교육센터** 등의 **설치를 지원**하며,

❷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**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**을 **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**하여, **지방세 감면**, **연구개발 지원**, 생산 제품의 **공공기관 우선구매** 등을 **지원**하게 된다.

❸ 또한, 관련 대학, 연구소, 단체 등을 **전문연구기관** 또는 **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**하여, **연구개발,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**하게 된다.

4. 기대 효과

□ **산업부**는 **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·확산**을 통해 **에너지 전환**, **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**, **혁신 성장동력 확보**뿐만 아니라,

○ **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** 등에 **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**한다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김인곤 사무관(☎ 044-203-5394), 박성수 사무관(☎ 044-203-53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주요 내용

□ **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** (제5조 ~ 제6조)

○ 산업부 장관이 **5년마다 의무적**으로 기본계획 수립

* (**포함내용**)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관련 기본목표, 중장기 발전방향, 단지별 발전전략, 대상구역, 지원 등에 관한 사항

□ **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** (제8조 ~ 제10조)

○ 필요시 **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**에 의해 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

* (**지정요건**)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, 에너지산업 등 집적 및 융복합 효과, 지역경제발전 기여 등

□ **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한 지원** (제12조 ~ 제16조)

○ **기반시설 설치, 에너지특화기업** 지정 및 R&D, 지방세 감면 등 지원

○ (**시행령 위임사항**) 기반시설 지원대상,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등

□ **전문연구기관의 지정** (제17조)

○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**에너지산업 관련 연구기관·연구소·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**

○ (**시행령 위임사항**)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·지원범위 등

□ **전문인력의 양성 등** (제18조)

○ 에너지산업 관련 **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**, 전문인력 양성·활용 등에 대한 **시책 수립**

○ (**시행령 위임사항**)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·지원범위 등

참고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

□ **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** (제12조)

○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관련 **연구개발, 인증·평가·실증, 기업 지원, 교육·훈련** 등에 필요한 시설

□ **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** (제14조 ~ 제15조)

○ (**지정요건**) 에너지 및 연관산업 매출액이 전체의 50%이상, 특허, 연구개발 전담부서, 우수기술자 보유 등을 고려

○ (**지원내용**) 산업부장관 및 시·도지사의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대한 **에너지특화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요청**

□ **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** (제16조 ~ 제18조)

○ (지정요건) **연구인력·장비 등 연구개발 역량의 확보, 산·학·연 협조체계 운영** 여부 등을 고려

○ (지원내용) **연구개발 및 실증사업, 시장·기술 조사·분석, 에너지 신산업 발굴**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

□ **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** (제20조 ~ 제22조)

○ (지정요건) 에너지산업등의 육성에 **필요한 교육과정, 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보유** 등을 고려

○ (지원내용) **강의료, 교재** 및 **실습기자재비, 현장실습 경비** 등 지원

□ **기타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** (제2조 ~ 제11조)

○ '에너지연관산업' 등 정의 규정 구체화,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, 실태조사 방법·절차 등 규정